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일반(一般)

윤리 규범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동성그룹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제·개정 이력

제·개정 번호	개정 페이지 및 내용	제·개정 일자
0	제정	2014. 6. 1
1	개정	2017. 1. 1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목 차

제 1 장 서문

제 2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기본원칙)

제 3 장 고객만족 경영

- 제 4 조 (고객지향)

제 4 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 제 5 조 (공정경쟁)

제 5 장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금지

- 제 6 조 (적용범위)
- 제 7 조 (부정청탁의 금지)
- 제 8 조 (금품등 제공의 금지)

제 6 장 기본윤리 준수 및 임직원 존중

- 제 9 조 (기본윤리 준수)
- 제 10 조 (임직원 존중)

제 7 장 주주에 대한 책임

- 제 11 조 (주주의 권익 보호)

제 8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제 12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 제 13 조 (자유경쟁시장 질서 존중)
- 제 14 조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지)

제 9 장 안전 보건 환경 중시 경영

- 제 15 조 (안전 보건 경영)
- 제 16 조 (환경 경영)

제 10 장 부칙

- 제 17 조 (시행시기)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 제 1 장 서 문 】

고객지향, 고객만족경영

고객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2.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3. 고객의 정보와 이익을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회사는 협력회사에게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1. 협력회사에게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3.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금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협력한다.
2.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기본윤리 준수 및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임직원간에 상호 존중하며 동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한다.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1.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2. 회사는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회사는 경제발전에 기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회사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회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안전·보건·환경 중시 경영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무재해 사업장을 추구한다.

1. 임직원은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 보건,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친환경적 성장을 추구한다.

【 제 2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동성그룹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공직자, 주주,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 중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1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거나 동성 제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3.2 회사의 임직원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 3.3 본 규정에서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의 해석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실은 해당 안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사 결정하도록 한다.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 제 3 장 고객만족 경영 】

제 4 조 (고객지향)

- 4.1 회사는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1.1 고객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임을 인지하고 항상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한다.
 - 4.1.2 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4.1.3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히 알린다.
- 4.2 회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4.3 고객 정보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4.3.1 고객의 정보 및 이익을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4.3.2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3.3 고객과의 약속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드시 지킨다.
 - 4.3.4 고객으로부터의 제품, 서비스 및 고객정보관리 등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 제 4 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

제 5 조 (공정경쟁)

- 5.1 공정한 절차에 의해 협력회사를 선정한다.
 - 5.1.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 5.1.2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업체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회사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 제도를 수립하여 이를 준수한다.
 - 5.1.3 협력업체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학연, 지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한다.
- 5.2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 5.2.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협력업체에 위압적인 언행 및 품행상의 행위
 - ② 고의로 구매가격을 인상 또는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를 변경하거나 발주량을 조정하는 행위
 - ④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 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및 접대 등을 제공받는 행위
 - ⑥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금전 대차 행위
 - ⑦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 ⑧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정보나 회사에 제공된 타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5.2.2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과 사전에 충분한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개인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 장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

제 6 조 (적용범위)

6.1 본 장에서 “공직자등”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② 한국은행·공기업 등 법령이 인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③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6.2 본 장에서 “금품등”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제 7 조 (부정청탁의 금지)

7.1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2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예외에 관하여는 『동성그룹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정한다.

제 8 조 (금품등 제공의 금지)

8.1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1 회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8.2 임직원은 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전 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8.3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동성그룹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정한다.

【 제 6 장 기본윤리 준수 및 임직원 존중】

제 9 조 (기본윤리 준수)

9.1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한다.

9.1.1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① 회사 재산에 대해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② 비품, 집기, 시설 등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전결 규정을 준수한다.

- ④ 회사의 지적재산권,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산을 보안규정에 따라 보호하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9.1.2 직무수행상의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한다.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금품, 용역, 기타 편의 등)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강요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② 직위,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한다.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인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③ 공정한 보고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판단이나 회사의 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부하직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상호간 존중 및 동성그룹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임직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풍기문란, 불륜 등 건전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 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정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승진, 이동, 명절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이용한 임직원간의 허례허식(선물, 화환, 축전,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9.1.3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① 회사와 직 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 ②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경쟁회사 또는 협력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④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간접 운영 또는 출자하거나 타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임직원 존중)

10.1 임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한다.

- 10.1.1 임직원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10.1.2 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시를 아끼지 않는다.

10.1.3 임직원은 회사의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1.4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다른 직무에 대하여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 이익을 지향한다.

【 제 7 장 주주에 대한 책임 】

제11조 (주주의 권익 보호)

11.1 건전한 이익실현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한다.

11.1.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주주들의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11.2 투명한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정확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개한다.

11.2.1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및 관련 법령, 회사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고 유지된다.

11.2.2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2.3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는 관련 법령 및 회사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 제 8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제12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12.1 건전한 이윤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성실한 조세납부로 회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2.2 학벌, 성별 출신지역, 장애, 인종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12.3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12.4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제13조 (자유경쟁시장 질서 존중)

13.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13.2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3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경쟁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13.4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의해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제14조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지)

14.1 고객,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대내외 경영활동에 있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며 신분 및 정치적

분류번호	기업문화-1	윤리규범	제,개정일자	2017. 1. 1
페이지			개정번호	

견해의 차이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14.2 노동권을 보장하고 범죄 등 기타 보편적 인권을 침해, 조장할 수 있는 일체의 계약이나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4.3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내 관련 법규와 국제 사회의 규범, 조약을 준수한다.

【 제 9 장 안전·보건·환경 중시 경영 】

제15조 (안전·보건 경영)

15.1 모든 경영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보건 개선활동으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15.2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 보건 관련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한다.

15.3 사업장내 안전, 보건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제16조 (환경 경영)

16.1 환경관련 국내 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16.2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설투자를 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16.3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영역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한다.

【 제 10 장 부 칙 】

제 17 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규범은 2014 년 6 월 1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윤리규범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